카이스트 방송국 국칙

2017.11.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방송국은 카이스트 방송국 또는 Voice Of KAIST (VOK)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방송국은 KAIST(이하 본원) 대전 소재지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1. 본원 언론 매체로서의 연구 및 활동
2. 건전한 여론 조성 및 이의 효율화
3.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제4조 활동

본 방송국은 방송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활동을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1. 본 방송국은 방송 업무를 위하여 국장, 지도교수, 임원을 둔다.
2. 본 방송국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를 둔다.
3. 국장의 권한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국장

국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본 방송국을 대표한다.

<2017.11.14 개정>

제7조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본원 총장이 임명하며 방송 업무 전반을 감독한다.

<2016.11.22. 개정>

제8조 임원

1. 구성
   (1) 본방송국은 국장, 부국장, 총무, 각 부 부장을 임원으로 한다.
   (2) 국장, 부국장, 총무를 국장단이라 칭한다.
2. 자격

(1) 국장과 부국장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3학기 이상의 방송국 활동을 한 정국원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2) 총무 및 각 부 부장은 정국원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3)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3. 선출
(1) 국장 및 부국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단, 본 조 6항 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총무는 가을학기 임시총회에서 선출되며 정기총회에서 국장이 임명한다. <2015.11.24 개정>
(3) 각 부 부장은 각 부의 방침에 따라 지명되며 정기총회에서 국장이 임명한다.

4. 권한
(1) 국장은 방송국 전반적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부국장은 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3) 총무는 방송국의 일반적 재정권을 행사하며, 정기 행사 종료 후 첫 회의에서 정국원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단 정국원은 이를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4)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 업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임기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며, 중임할 수 있다. 단, 국장과 부국장은 중임할 수 없다.

6. 결원
(1) 국장과 부국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장이 후임자를 지명한다.
(2) 국장의 부재 시
① 일시적 부재의 경우, 복귀 시까지 부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영구적 궐위의 경우, 부국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3) 부국장의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부국장의 후임자를 선출한다.
(4) 본 항에 따라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자격 박탈
(1) 국장은 부국장의 동의하에 다른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5인 이상 정국원의 발의에 의해 국장의 탄핵을 임시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5인 이상 정국원의 발의에 의해 부국장의 탄핵을 임시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국원

제9조 구분
본 방송국의 국원은 명예국원, 정국원, 수습국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선발
본원 재학생 중 정국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수습국원으로 선발한다.

제11조 수습국원

1. 수습국원은 방송국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며 방송국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2. 수습국원의 교육은 전체 교육, 부서별 교육으로 나눈다. 전체 교육은 특공대, 정규 방송 교육, 모의 방송제를 포함한다.
3.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며, 국장의 권한으로 그 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다.
4. 국정에 따라 전체 교육은 정국원 회의, 부서별 교육은 부서별 정국원 회의를 통해 추가, 제거, 보강할 수 있다.

제12조 정국원

1.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국원에 한하여 정국원의 평가를 거쳐 국장이 정국원에 임명한다.
2. 정국원의 재적기간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5학기로 한다.

제13조 명예국원

1. 정국원 재적기간 동안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마친 국원에 한하여 국장이 명예국원으로 임명한다.
2. 본 방송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장의 판단 하에 명예국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의무

1. 본 국칙을 준수할 의무
2. 성실히 방송국 활동을 할 의무
3.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존중할 의무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1. 총회는 과반수의 정국원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 의장은 국장이 된다. 단, 8조 7항 12호의 경우에는 실무부국장이 의장이 된다.
3. 매년 가을학기에 정기총회를 갖는다.
4.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국칙의 개정을 의제로 한다.
5. 국장이나 부국장, 정국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국칙의 개정 및 8조 7항의 탄핵은 투표자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국장단의 선출 및 총회 안건의 통과는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국장단 선출 투표 결과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매 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4) 투표 결과 득표자 전원이 득표에서 동률을 이루거나 득표자가 2인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회 의장의 발의로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성-반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찬성-반대투표 결과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국장단으로 선출하며 최고 찬성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찬성-반대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6) 최고 득표자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의장의 발의 후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국장과 부국장이 국장단을 임명할 수 있다.

7. 선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국장단을 대리인으로 하여 투표할 수 있고, 기표할 후보를 표명해야 한다. 단, 부재자의 경우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국원 혹은 국장의 동의를 얻은 정국원에 한한다.

제16조 국원회의

1. 매주 정기 국원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국장이 된다.
2. 국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 국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국장은 국원회의의 소집권을 다른 정국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모든 정국원은 국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국장은 국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6. 국원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제17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 방송국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장이 된다.
2. 임원회의는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임원회의는 방송국의 중요 의결 사항을 의제로 한다.
4. 임원회의는 국장의 판단 하에 국원회의와 병행할 수 있다.

<제5장> 활동

제18조 방송

1. 방송은 시험방송, 정규방송, 특별방송으로 구분한다.
   (1) 정규방송은 1일 총 30분 이상의 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국원은 국장의 승인 및 책임 하에 특별방송을 할 수 있다.

제19조 영상

1. 영상은 정규영상, 뉴스, 기타 영상으로 구분한다.
   (1) 정규 영상은 매년 가을학기 제작 및 배포, 뉴스는 정규학기 제작 및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2) 국정에 따라 (1)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국장은 당 해 정규 영상을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
(4) 국장은 정규학기에 뉴스를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
(5) 국장은 기타 영상을 제작할 주체를 포함한 국원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가진다.
(6) 정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일정, 주제는 (3)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7) 뉴스 제작 전반에 관한 일정, 주제는 (4)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8) (5), (6)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 회의에서 실무 국장 혹은 실무 국장이 지정한 국원이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회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2. 영상의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원들이 검토한다. <2016.11.22. 세칙 제정>
(1) 공공성을 지향하여 제작한다.
(2) 편향된 시각을 담지 않으며 특정 인물 및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을 배제한다.
(3)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정기행사

1. 신입생 환영 방송제, 가요제를 정기행사라 칭한다.
2. 매년 정기 행사를 행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행사를 추가, 변경,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내부행사

1. 국장이 방송국 내부 행사를 둘 수 있다.
2. 3년마다 홈커밍을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행사지원

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업무를 행한다.

제23조 기재지원

타 단체에서 본 방송국의 기재를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술부장의 동의하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기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1. 본 방송국의 재정은 운영비와 국비로 구성된다.
(1) 운영비는 교비,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을 포함한다.
(2) 국비는 국원들의 활동비와 수당의 일부를 포함한다.
2. 본 방송국을 통하여 국원이 본원 내외 공식 행사에서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수당

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당의 10%, 5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까지는 10%, 그리고 초과한 금액의 5%를 국비로 지불해야 한다.

3. 상항에서, 수당을 받은 국원은 총무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
4. 국장단은 2~3월 중 연간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국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5. 행사 참가비, 외부 지원금의 목적을 위한 활동 혹은 행사 후 잔액을 차액이라 하며, 행사 참가비의 차액은 운영비, 외부 지원금의 차액은 국비로 전환한다.

제25조 수당

본 방송국 국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징계 및 포상

제26조 징계

1. 본 방송국 국원이 방송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해당 국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국원에 대하여 국장은 부국장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본 방송국 국원이 본원과 방송국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경우에 국장이 총무의 동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28조 보칙

본 국칙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국원회의를 거쳐 국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부칙>

1. 이 국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2. 본 국칙 개정에 대한 기록은 국장과 부국장, 혹은 국장이 지정한 국원이 책임 지기로 한다.